

영등포구의회
제135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2008. 4. 2.



運 營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윤준용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

- 본 조례 개정은 2007. 5. 11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법령에 적합하게 조례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임.

■ 개정내용

-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2 를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로 변경(안 제1조)
- 영 제15조를 영 제33조로 변경(안 제2조)

검토의견

- 이 건의 개정조례안은 2007. 5. 11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으로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조문을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의 내용의 변경 없이 단순한 인용 법령의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 4. 2.

보 고 자 : 김 병 욱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34조 (상해·사망 등의 보상) ①지방의회의원이 회기 중 직무 (제61조 단서에따라 개최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폐회 중의 공무여행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 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1. 의정활동비 : 별표 4에 따른 금액
2. 여비 :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금액
3. 월정수당 :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5조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시·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시·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직무로 인한 상해·사망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 제2항의 보상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도의 경우에는 부시장이나 부지사,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의회 의원 1명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

3. 의무직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

④ 법 제34조에 따른 보상금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신청을 받아 보상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⑤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보상금의 지급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영등포구의회
제135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2008. 4. 2.



運 營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윤준용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

- 본 조례 개정은 2007. 5. 11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법령에 적합하게 조례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임.

개정내용

- 지방자치법 제37조를 제42조로 변경(안 제1조)
- 지방자치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 제113조 내지 제116조로 변경하고 제5호 및 제6호 신설(안 제2조)

검토의견

- 이 건의 개정조례안은 2007. 5. 11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으로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조문을 일부 변경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 4. 2.

보 고 자 : 김 병 욱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42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제113조 (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6조 (합의제행정기관)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7조 (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동은 제4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설립·운영) ①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공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 내지 제52조·제53조 제1항·제56조·제57조 내지 제63조·제63조의2 내지 제63조의4·제64조·제64조의2·제65조·제65조의2·제66조·제66조의2·제68조·제69조·제71조·제71조의2 내지 제71조의4·제72조 내지 제74조·제75조의2 내지 제75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